

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·임차 승인을 받은 자(양도·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)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(제118조제1호의3 관련)

위반내용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	법 제41조제7항 제1호	승인 취소		
2.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	법 제41조제7항 제3호	시정 명령	승인 취소	
3. 법 제2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	법 제41조제7항 제4호	시정 명령	시정 명령	승인 취소
4.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1조제7항 제2호	시정 명령	승인 취소	
5. 법 제4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7항 제5호	승인 취소		